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민정 | 서울시립대학교

전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정당은 19대 총선을 맞아 개혁공천의 상징적 화두로 ‘여성 지역구 공천’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초라하게 끝났다. 이에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대 총선은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남겼다. 첫째, 제도 관철을 위한 당내 합의 및 정당화 노력이 필요하다.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30% 여성공천 과제는 지켜지지 않았고 각 정당내 여성공천 관련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경선)은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여성 후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필수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선 방식의 수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성이라는 변수가 공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gender)이 중요한 공천 변수가 되도록 판을 짜줄 필요가 있다.

주제어 | 19대 총선, 여성후보,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여성친화적 공천, 상향식 공천, 여성의 정치세력화

* 본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자: 김원홍, 이수연, 김민정, 전선영)이 2012년에 기본 과제로 수행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 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 연구”를 부분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는 논문임을 밝힙니다.

I. 서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¹⁾ 확대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주변화된 소수 집단이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집단이 의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여성은 과소대표된 대표적 집단으로 꼽힌다.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함으로써 평등사회와 균형사회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성들 외의 소수자들의 평등한 기회와 참여를 통한 사회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 및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필요성 논의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김현희 외 2010, 141-2; 박경순 2008; 유숙란 2006, 128; 이미경 외 2001, 187-8; 조현옥 외 2010, 110-113; 황아란 2002, 205) 또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여성의 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근거로 재고되고 있다(김원홍 외 2012; 이재희 외 2012, 15-17).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실제 선거과정에서 여성의 공천 확대 및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19대 총선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여성 당대표들의 여성공천 확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할당제를 고수하는 것에도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남성의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원초적 비난에서부터 개인주의와 능력중시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위배된다는 논의까지, 여성 할당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움직임에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선거이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빠른 시일에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일차적으로 공천과정

1) 여기서 대표성 개념은 두 가지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한 집단의 대표가 해당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학적 대표성(sociological representation)’이다. 다른 한편, 대표자가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보상과 처벌을 통해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대리적 대표성(agency representation)’이다(이현우 2002, 340-341). 여성의 정치 대표성 논의는 전자의 개념에 기초한다.

에 주목하였다. 공천과정에는 사회 환경 및 문화, 정당 환경 그리고 각 정당이 처해 있는 정세 분석 등이 고스란히 투영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정당의 인식이 집약적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김민정 2002; 서현진 2004, 267; 이동윤 2012, 97-8; 최준영 2012, 60-1; Lundell 2004, 26; Matland 2005, 94; Norris et al. 1995; 108-9).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수의 노력들이 부딪히는 한계를 공천과정에서 극명하게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천과정에서 이러한 양상 및 한계를 규제하고 여성후보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본 연구가 공천과정에 주목한 이유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할당비율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게다가 실제 선거에서 여성과 남성의 당선 경쟁력을 볼 때 결코 여성의 당선율이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황아란 2002). 이 점에 주목하면 여성 후보자의 당선으로의 길은 일차적으로 정당 공천 여부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 차원에서의 공천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 대표성에 대한 기존 논의

정당의 후보공천은 ‘정치충원(political recruitment)’의 중요한 첫 단계이다. 정당은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유권자 선택을 미리 제한하고 규정한다. 또한 입법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풀(pool)을 형성하는 기

능을 하게 된다. 또한 공천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들은 개인으로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정치체제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전용주 2010, 40; Katz 2001).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후보선출과정은 대부분 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 국가나 정당에 따라 지극히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천과정에 사회환경 및 문화와 정당환경 그리고 각 정당이 처해 있는 정세 분석 등이 복합적으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일반적 수준의 정당의 후보선출방식이 서술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공천과정을 결정하는 정당의 당헌 및 당규는 비교적 쉽게 바뀔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이후 한국 정당의 공천과정은 선거별로, 그리고 정당별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최준영 2012, 63). 이에 맞춰 여성의 정치 대표성과 정당의 공천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도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기보다는 각각의 선거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나 해외사례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현우(2002)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 요인을 검토한다. 이 연구는 동일한 대표선출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의 대표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선거제도 외에 여성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정당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정당의 특성을 규정하는 내부적·외부적 요인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정당의 이념과 집중도, 정당경쟁성 등을 주요한 원인 변수로 삼아 각 원인들이 여성 후보의 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민정(2002)의 연구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후보공천방식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을 살펴본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후보공천과정을 법제화한 반면,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두 국가 사례 가운데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는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을 위한 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 정미애와 문경희(2010)의 연구는 스웨덴과 일본의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으로 ‘여성당’과 ‘생활자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여성 할당제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유용하지만, 기존의 남성 중심

적 정치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데 역부족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에서 정당공천시 자주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여성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다. 당선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성을 공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당들은 전개해왔다. 그러나 황아란(2002)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이 당선경쟁력이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은 남성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주요 정당의 공천이 주요 관건일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의 프리미엄이 여성 후보자에게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서현진(2004)은 17대 총선에서 등장한 여성 후보자의 개인적 배경이 당선과 주요 정당 공천에 미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였다.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치는 변수로서 정당 효과가 후보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밝힌다. 또한 당선의 필수요소인 주요 정당 공천에 미치는 변수로서 주요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여성 후보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 배경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학력 수준이 높고 재산이 많거나 정치적 경험을 가진 여성 후보자가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고 의회에 진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오미연 외(2005) 연구자들은 15-17대 국회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각 주요 정당이 어떤 여성을 정치에 받아들였는가에 관한 고민에서 시작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정당이 여성 국회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변수로 지역적 안배와 재정적 기여, 주요 정당의 역학관계와 정당성을 위한 여성의 활용 등 4가지를 상정한다. 그 중에서 주요 정당의 역학관계와 정당성을 위한 여성의 활용 측면이 주요 변수임을 설명한다. 김민정(2009)은 18대 총선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이 여성을 공천하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치에 충원되는 여성이 자율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이 때 지역적 고려와 재정적 기여, 정당의 당내 역학관계, 여성후보가 가지는 상징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한다. 그 중에서도 18대 총선의 경우, 여성후보가 가지는 상징성이 비교적 사라진 반면, 전문가와 정당인의 공천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상향식 공천에 하향식 공천을 조합한 공천방식이 여성후보 공천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18대 총선에 따르면 하향식의 공천이 한국에서 여성 후보자의 공천에 전혀 유리하지 않았음

을 밝힌다. 김민정(2012)은 또 다른 논문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내 공천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을 공천해야 한다는 전제를 취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공천 방식 가운데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 후보자에게 유리한가를 고민한다. 상향식 공천제는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정당 내 소수 엘리트 사이의 카르텔화를 촉진하였고, 당의 중간급 활동가의 역량을 급속하게 약화시켰으며, 당원과 정당지도부와의 관계를 원자화, 단순화하여 정당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향식 공천제는 여성과 같은 신인이나 지명도가 약한 후보에게 원천적으로 불리하며, 이는 곧 17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상향식 공천제의 결과로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김원홍 외(2012)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당의 공천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다. 해당 연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성 당선인들의 의원 경력지속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의원 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여성공천 할당의 무제의 보완과 정당별 여성전용 선거구를 일정비율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성후보의 공천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통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정당내에서 어떠한 규칙으로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가 않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졌으며 여성을 공천하는 데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 여성정치 대표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Ⅲ. 19대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결과

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여성 후보 공천 방향 및 결과

새누리당²⁾은 19대 총선을 맞아 기본적으로 당의 전면적 쇄신을 기치로 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2011.12.19. 구성, 위원장 박근혜) 정치쇄신분과위에서 비례대표 선발이나 전략공천 등을 총론으로 공천기준 및 전반적인 공천 심사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지역구의 20%인 최대 49곳을 전략공천하고, 현역 하위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 밖에 새누리당은 공천의 적극 고려기준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마련하였고, 이를 위한 노력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천명과 가산점 부여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노력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공심위 구성도 10명 중 여성은 2명(내부 인사(현역의원) 1명과 외부인사 1명)에 그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하여서는 당대표와 당의 의지가 관건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230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16명에 그쳐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는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경선시 여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역시 경선 참여 여성 4인이 모두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빛을 보지 못했다.

〈표 1〉 새누리당 여성 참가 경선 지역

지역	선거구	경선 참여인수	경선참여자 이름	비고
서울(1)	강북을	2	안홍렬, 이수희(女)	여론조사
울산(1)	북구	3	박대동, 박천동, 최윤주(女)	여론조사
경기(13)	안양 만안	3	신계용(女), 장경순, 정용대	여론조사
	평택을	3	이인숙(女), 이재영, 전진규	여론조사

민주통합당³⁾의 공천 방식은, 통합 이전 민주당 개혁특위가 마련한 ‘지역구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후보자 자격

2) 새누리당 당헌 참조 : 제정-1997년 11월 21일, 전면개정-2005. 11. 17, 개정-2012. 02. 13, <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readConstitutionView.do#a> (검색일: 2012년 6월 8일)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2003년 12월 26일 제정 , 전면개정 2005. 12. 21, 개정 2012. 02. 09

3) 민주통합당 당헌 제정 2011. 12. 16, <http://www.minjoo.kr/intro/rule.jsp> (검색일: 2012.05.31.)

심사를 3단계⁴⁾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도덕성은 물론이지만 ‘정체성’을 더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⁵⁾ 이는 18대 총선 당시 ‘당선가능성’에 대해 두었던 중점에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되었다.⁶⁾ 이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여성 지역구 후보 공천에 관한 규정을 당헌으로 규정하면서 여성 지역구 후보 공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우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여성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30%로 정하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여성 지역구 후보를 전체 지역구 후보의 15%를 공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⁷⁾. 또한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규정을 당헌 104조에 두어, 경선에서 여성의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여성 공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성 예비후보들 및 구성원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불거지는 등 내부적 논란을 겪었으나⁸⁾, “정치에 약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남윤인

4) 1단계 : 도덕성, 2단계 : 정체성, 3단계 : 후보 적합성

5)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은 2012년 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비전인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를 이룰 수 있는 분을 뽑겠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민주당 ‘3단계 자격심사’로 공천 물갈이” (2012-02-02, 03면))

6) 4년 전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공천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당선가능성 40점, 면접 20점, 도덕성 10점, 정체성 10점, 기여도 10점, 의정활동 10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력에 흠이 없는 개혁 성향의 인물을 발탁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큰 폭의 물갈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외부 공심위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고, 민주당의 정강·정책의 개혁성향에 비추어 예비후보의 개혁성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성기철, “민주 “개혁·도덕성 공천”… 韓 대표-외부 공심위원 회동” (2012.02.05.)) ; 아시아투데이, “민주 “공천배점, 정체성 비중 높인다” (2012-02-08)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94350>(검색일: 2012년 6월 8일).

7) 당규 60조. 그러나 단서 조항을 두어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만약 여성 15%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단서조항이다.

8) 민주통합당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15% 의무추천제가 당규로 확정되자, 40여명의 남성 정치인들은 기자회견과 온라인 토론장 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당내의 주요 위원회를 압박했다. 할당제를 반대하는 남성의원들은 “약자의 배려조항을 과도하게 넘어선 여성 15% 의무공천제도를 재논의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합의조정한다대로 예외 조항 신설이나 권고조항으로 재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

〈표 2〉 민주통합당 여성관련 조항

구분	현행
당헌 제 8조(성평등 실현)	① 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헌 제102조(심사기준)	③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경선거산점 당헌 제104조(추천선거)	⑤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여성할당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 제8장 보칙, 제60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단,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가능)

진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보완되면서 시행된 여성 정치할당제가 새삼스럽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할당제 반발 사건에서는 추상적 차원에서 사회적 집단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대립이 아닌, 구체적인 여성기득권 세력이라고 특정 대학 출신을 적시하여 남성의 물질적 이해를 침해하는 대상으로 설정했다. 남성정치인들은 특정 여대 출신의 여성의원들을 적시하면서, 여성할당제는 기득권 여성들의 권리 지키기라고 일축했다. 남성정치인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득권을 가진 여성의원들’은 배려가 필요한 약자 여성이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손에 잡히는 이해관계가 얽힐 때, 권력의 배분을 둘러싼 투쟁은 매우 치열해지는 양상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경희(2012)는 이를 현재 한국의 할당제가 제도정치 내에서 낙후한 여성의 대표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최소한 지점에서 동의를 끌어내고 있지만, 그것이 진보의 가치로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⁹⁾ 필요한 조치로서 관철시키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공천심사에 최종 응모한 총 53명의 여성 공천신청자 중에서 24명(45.3%: 전략공천 5명, 경선 4명, 단수공천 15명)이 공천되었으며, 이 중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한 3인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총 지역구 246개 중 21개 (8.5%)의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가 공천되었다.

〈표 3〉 양 정당의 공천 방향 및 제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기본방향	지역구의 20%인 최대 49곳을 전략공천 현역 하위 25%를 공천에서 배제	3단계 후보공천 심사
후보자 심사기준	①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②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 성을 갖춘 인사 ③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 책임안 능력이 있는 인사 ④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⑤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	도덕성과 정체성 강조
후보자 추천기구 및 구성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 외부인사 7인 + 국회의원 3인 - 2인 여성(20%)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 외부인사 8인 + 내부인사 7인 - 정당사상 최초로 여성 30%를 구성하 도록 된 당헌에 따라서 여성위원을 5 명(33.3%)임명함.
여성 관련 사항	가산점 부여 - 신인,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 20% -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현 직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원외위원장 뜻함), 전·현직 광역의회 의원 10% - 현역 광역기초의원, 전·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전·현직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서 동급 이상의 공직을 수행한 경우, 여성후보자간 경 선 경합시 0%	지역구 15% 여성후보 의무공천 당헌당규에 여성가산점 부여 명문화 - 여성 가산점 차등 부여 - 신인 여성 정치인에게 20% - 전직의원 및 비례의원에게 10% - 현역의원이 현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0%

9) 한겨레, “영국·프랑스도 의무화 거쳐”(2012-02-0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126.html(검색일: 2012년 6월 8일)

2.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 유형과 결과

1) 공천 유형과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통계를 보면, 총 902명이 지역구에 출마하였다. 이 중 63명(7.0%)이 여성인데, 무소속 출마자 6명을 제외한 정당 공천자는 57명이며, 이는 총 정당공천자 661명 중 8.7%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중 새누리당이 16명, 민주통합당이 21명의 여성 공천자를 추천하였으며, 이들은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뉠 수 있는 방식들로 공천되었다. 하향식은 당의 공천심사기구에서 단수공천, 전략공천을 통해 지역구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상향식은 각 정당이 일차적으로 공천심사기구에서 후보자격 및 역량을 심사한 후 2인 이상의 후보를 제시하고, 최종 선출은 당원이나 일반유권자들이 행사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다.¹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성할당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표방한 가운데 주요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공천한 방식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새누리당은 30% 지역구 여성할당을 주장했으나, 실제 230개 지역구에 16명(7.0%)의 여성만을 공천하였다. 공천된 16명 전원은 하향식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8명은 단수공천, 나머지 8명은 전략공천되었다. 상향식 공천방식인 경선에 진출한 여성후보는 4명이 있는데, 이들은 전원 여론조사경선에서 탈락했다.

10) 공천 방식은 후보 지명에 참여하는 주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의 포괄성(inclusiveness), 그리고 그 과정이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인지 분권화(decentralization)인지 정도에 따라, 그리고 공천 체계가 제도화(bureaucratic)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지(patronage-oriented)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Matland 2005, 95).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상향식과 하향식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공천 방식으로 설명한다. 상향식이란 당원이나 일반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향식은 정당지도자 혹은 정당 내에서 선거를 거치지 않은 비선출직 선정위원회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으로 1인 혹은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김민정 2012, 41-42).

11) 야권연대경선에서 패배하여 사퇴한 경남 진주시을 서소연 후보

〈표 4〉 주요 정당 지역구 후보 여성 공천유형

구분	공천유형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	단수공천	8	14(1 ¹¹⁾)
	전략공천	8	5(1 ¹²⁾)
	경선		
	여론조사경선		
	국민경선		3
	국민경선 + 국민여론조사		1(1 ¹³⁾)
	무경선		1
낙천	컷 오프	55	18
	경선 패배		
	여론조사경선	4	
	국민경선		4
	국민경선 + 국민여론조사		3
	미등록		1
	기타	2 ¹⁴⁾	1 ¹⁵⁾

* ()안 수는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경선 패배 및 사퇴한 후보의 수임.
 자료 : 각 정당 홈페이지

민주통합당은 15% 지역구 여성할당을 주장했고, 야권단일화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총 210개 지역구에 21명(10.0%)의 여성을 공천하였다. 방식은 단수공천으로 13명, 전략공천으로 4명 등 하향식으로 17명이 공천되었고, 상향식인 경선 방식으로 3명이 1순위로 통과하여 최종 공천되었다. 나머지 1명은 경선후보로

-
- 12) 야권연대경선에서 패배하여 사퇴한 경기 안산단원구갑 백혜련 후보
 - 13) 야권연대경선에서 패배하여 사퇴한 서울 은평구를 고연호 후보
 - 14) 공천신청철회한 서울 중구 나경원 후보와 신은경 후보
 - 15) 지역구 관리 등 경쟁력 인정받아 단수공천되었다가, 금품수수 의혹 논란으로 공천철회된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후보

선정되었으나, 상대후보가 등록하지 않아 무경선으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이다. 그 밖에 경선 후보로 선정되었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7명의 여성후보가 있다.

양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19대 총선에서 여성정치인의 총원 과정은 주로 하향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향식은 새누리당에서는 전패,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9개 지역구 총 11명의 경선후보 중 4명이 1순위를 기록하여 통과하는 등 절반에 못 미치는 성공을 경험했다고 하겠다.

2) 여성후보의 경쟁력과 공천 및 선거 결과

다음으로 총선 당시의 쟁점, 정당간 역학관계, 지역구도 및 정서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공천유형과 그 정치적 결과를 단순 비교해 보면 하향식 공천유형에서 새누리당은 25%인 4명이 당선되었고, 민주통합당은 64.7%인 11명이 당선되었다. 상향식의 경우는 민주통합당에서 50%인 2명이 국회에 진출하였다.

〈표 5〉 주요 정당 여성 공천유형별 결과

공천유형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	당선	공천	당선
하향식	16	4(25.0)	17	11(64.7)
단수공천	8	2	13	9
전략공천	8	2	4	2
상향식			4	2(50.0)
여론조사경선				
국민경선			3	1
국민경선 + 국민여론조사				
무경선			1	1
총	16	4 (25.0%)	21	13 (61.9%)

자료 : 각 정당 홈페이지

〈표 6〉 현직 및 계파 효과

정당	현직 여부	계파	하향식 공천자			상향식 공천자			낙천자		
			공천	당선	당선 비율	공천	당선	비율	컷 오프	경선 패배	
새누리당	현직	친이	9	5	11.1				11	8	
		친박		4		1					2
	전직	친이	1		1	100.0				1	
		친박									
	신인	친이	6		2	33.3				43	4
		친박								1	
민주 통합당	현직	친노	4	1	4	100.0					4
		기타		3	3						1
	전직	친노	4	2	3	75.0				3	
		기타		2	2						
	신인	친노	10	1	4	40.0	4	1	50.0	14	1
		기타		4	3		1	2		2	3

자료 : 계파의 경우 공천신청서 후보자가 직접 밝힌 경력사항과 다수의 신문기사 참조하여 재구성함.

후보들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조직력과 자금력 동원, 인지도, 특정계파 소속 등을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이를 측정할 방법은 없지만, 전 현직 의원 혹은 정치신인별로 분류하거나 특정 계파간 분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직 효과가 갖는 경쟁력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새누리당에는 이 효과가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공천기준으로 현직 25% 컷오프를 내세우면서, 현직 여성위원의 경우 20명의 신청자 중 11명이 컷오프 당했고, 9명만이 공천되었으며, 이 중 1명만이 당선되었다. 컷오프된 11명의 현직 여성위원의 경우 70% 이상이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고,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9명의 인사들의 경우 반반씩 친이와 친박이 차지하였다는 점을 볼 때, 차기 대선을 대비하여 당내 권력구도를 정비하려는 세력들간의 알력이 오히려 현직효과를 차감시

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내 유력 남성 인사들과의 경선에 패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파와 상관없이 현직 효과의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8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을 신청하고 4명은 단수공천, 나머지 4명은 경선에 참여하였다. 단수공천된 4명의 현역의원은 모두 당선되었다. 민주통합당이 이들을 공천함에 있어 공천이유로 든 것은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와 ‘단수신청/후보적합’ 판정이었다. 서울 광진을 추미애 의원, 서울 은평갑 이미경 의원, 경기 부천 소사구 김상희 의원이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이유로 단수공천되었고, 서울 구로을 박영선 의원은 단수신청 및 후보적합 이유로 단수공천되었다. 이들간의 공통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현역의원 및 다선 의원으로서 강한 조직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선비례대표였던 김상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들당의 핵심 당직을 겸임하고 있는 인사들이었다. 또한 공천을 신청한 7명의 전직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구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도 현격한 경쟁력 차이를 이유로 단수공천되었다. 경선에 참여한 4명의 현역의원 중 여-여 대결 및 신인 대 현역의원의 대결을 벌인 전북 익산시 을¹⁶⁾ 조배숙 3선 의원을 제외하고, 3명의 현역의원은 모두 초선 비례대표들로 경선 상대 후보가 모두 강한 조직력과 인지도 면에서 한 수 위라 할 수 있는 남성 의원들과 대결에서 패한 경우들이다.¹⁷⁾

3.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공천 확대 방안

19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5%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

16) 전북 익산시 : 전정희 후보 vs. 조배숙 3선 의원. 여성 신인가산 20%의 가점으로 전정희 후보가 조배숙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함.

17) 서울 마포갑(김진애 초선 비례 vs. 노웅래 전 의원), 서울 마포을(김유정 초선 비례 vs. 정청래 전 의원), 서울 강남을(전현희 초선 비례 vs. 정동영 전 의원)

한 결과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실제, 19대 총선의 지역구 여성 후보는 전체 902명 후보자 가운데 63명(7.0%)에 불과하며, 당선자는 19명으로 전체 246명 당선자 중 7.7%에 해당한다. 여성 후보를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주통합당으로, 지역구 여성 후보를 21명 공천하고 이 중에서 13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6명 공천하여 4명이 당선되었고, 통합진보당은 8명 공천하여 2명이 선출되었을 뿐으로, 여전히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이다. 이를 위하여 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관한 논리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며, ② 전체 의석의 50%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③ 정기 공직 선거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할당제 의무화, ④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위반시 이에 대한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여야 한다. ⑤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도 현재 적용되는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공천 30% 할당제’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여성공천비율 확대노력을 기울이는 정당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여성 공천비율을 30%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덧붙여 정당들이 여성 후보자를 더 많이 추천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을 5배 이상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지역구 후보자의 6.5%를 여성으로 추천한 새누리당과 8.5%를 여성 추천한 민주통합당에 각각 7억 4천만 원과 3억 8천여만 원 지급하였다. 여타 정당은 여성 후보자가 지역구 전체 후보자의 5%에 미치지 못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¹⁸⁾

둘째, 정당차원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친화적 공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의 참여 의무화 및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 ② 공천위원회에서 계파에 속하지 않은

18) 정치자금법 26조 2항 2호 나에 의거하여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기준에 있어 여성후보추천비율이 5/100-15/100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방식은 당시 18대 국회에서의 의석 수 비율(새누리당 162석, 민주통합당 80석)과 18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득표수 비율(새누리당 63.39%, 민주통합당 35.61%)에 근거하여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7억 4천4백만 원, 민주통합당은 3억 8천 9백만 원을 지급받았음.

대다수의 여성들의 역량을 드러내도록 할 수 있는 장 마련. 예를 들어, 여성 역량을 고려한 통합적인 공천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안) 마련을 고심해 볼 수 있다. ③ 후보자 조직동원력 보다는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론조사방법 방식의 경선제 도입, ④ 여성후보에 대한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략 공천 확대, ⑤ 여성후보 가산점 제도에 대한 당내 합의와 정당화에 대한 노력 강화 등이다.

셋째, 여성 후보 육성 및 발굴 강화를 위하여 ①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운영하였던 방식의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정당내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멘토 제도 운영, ③ 여성계와의 연대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 등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IV. 결론

19대 총선 300명의 당선자 중 여성당선자는 47명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총선 실시결과 ‘여성 정치참여 15%를 넘긴 해’로 기록될 일이지는 하나, 아직도 30%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19대 지역구 여성후보자는 전체 902명 중 63명으로 7.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8대 총선 당시 여성후보자 비율인 11.8%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주요 정당은 19대 총선을 맞아 개혁공천의 상징적 화두로 ‘여성 지역구 공천’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역구 전체 공천자 230명 가운데 여성 공천자를 16명(7.0%) 내세웠을 뿐이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여야 한다는 당규를 제정하였지만, 총 209명 중 21명(10.0%)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을 뿐이다.

지역구 여성공천이 초라하게 끝난 이유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인은 정당지도부의 의지부족, 계파정치 관행, 경선에서의 열세, 인력풀 문제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지역구 여성 공천의

장애 요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여성 정치 참여 증진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요 정당들의 전략공천 지역구 활용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당 우세지역이었던 서울의 강남이나 경상 지역에서 그 동안 열성을 보여 왔던 여성후보 공천이 미미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12.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정치할당제의 지속가능성과 여성 정치세력화.” 『경제와사회』 94호, 118-147.
- 김민정. 2002. “후보공천방식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여성연구논총』 17집, 3-31.
- _____. 2009.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충원.” 『사회과학연구』 17권 1호, 50-83.
- _____. 2012.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대표성.” 『아시아여성연구』 51권 1호, 37-70.
- 김영태. 2004.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 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3권 2호, 107-124.
- 김원홍, 김은경. 1998.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김복태, 차인순. 2011.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이수연, 김민정. 2012.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희, 오유석. 2010. “여성정치할당 10년의 성과와 한계.” 『동향과전망』 79호, 140-182.
-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41-63.
- 박경순. 2008. “여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연구.” 『서강법학』 10권 1호, 117-150.
- 서현진. 2004. “17대 총선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정당 공천.” 『국제정치논총』 44집 4호, 263-289.
- 오미연, 김기정, 김민정. 2005. “한국 정당의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제15, 16, 17대 국회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369-397.
- 유숙란. 2006. “‘크리티칼 매스’와 성평등 구조 구축 과정 :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집 1호, 123-142.
- 이동윤. 2012.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대표성: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5권 1호, 93-126.
- 이미경, 임혜란. 2001. “한국 여성정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35집 2호, 181-201.
- 이재희, 김도경. 2012.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 『여성학연구』 22권 3호, 7-41.

- 이현우. 2002.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42집 3호, 337-359.
-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217-236.
- _____. 2010.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현대정치연구』 3권 1호, 37-69.
- _____, 공영철. 2012. “정당 공천 유형과 경쟁도 그리고 선거 경쟁력 :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5권 2호, 133-151.
- 정미애, 문경희. 2010.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9호, 183-216.
- 조재욱. 2010.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문. 3월, 193-207.
- 조현욱, 김은희. 2010.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 전망』 79호, 110-139.
- 최준영. 2012.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보』 11권 1호, 59-85.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203-222.
- Katz, Richard S. 2001. “The Problem of Candidate Selection and Models of Party Democracy.” *Party Politics* Vol,7 No.3, 277-296.
- Krook, Mona Lena. 2009. *Quotas for Women in Politics: Gender and Candidate Selection Reform Worldw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undell, Krister. 2004. “Determinants of Candidate Selection: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rty Politics* Vol.10 No.1, 25-47.
- Matland, Richard E.. 2005. “Enhanc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Legislative Recruitment and Electoral Systems.” J. Balington and Azza Karam, eds. *Women in Parliaments: Beyond Numbers*. International IDEA. 93-111.
- Norris, Pippa and Joni Lovenduski. 1995. *Political Recruitment: Gender, Race and Class in the British Parlia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1997. *Passages to Power: Legislative Recruitment in Advanced*

Democrac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 2000. "Representation, Electoral Reform and Democracy: Theoretical and Empirical Lessons from the 1996 Elections in Israe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33 No.10, 1310-1336.

Rowling, Megan. 2004. "Europe Crawls Ahead." Soe Christian, eds. *Comparative Politics: Annual Editions 03/03*. New York: McGraw Hill.

Schattschneider, E.E.,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ston.

투고일: 2013.03.01	심사일: 2013.04.06	게재확정일: 2013.04.22
-----------------	-----------------	-------------------

【ABSTRACT】

Analysis of district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measures for enlarging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 focusing on the major parties

Kim, wonhong |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Lee, sooyeon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im, minjeoung |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eoul

Jeon, sunyoung | Project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ven though the major parties advocated their will to select an increased number of female district candidates for the 19th general election, the outcome was disappointing. Since guarant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fundamental to substantializing democracy,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for enlarging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by analyzing the major partie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nd its impact on the parties'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First, intra-party agreements and legitimation efforts for realizing female-friendly selection process are required. At the 19th national election, neither the promise of selecting 30 percent women candidates nor party regulations concerning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were kept. Second, the revision of selection methods is necessary since the open competition method of selection, which was recommended for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been proven unfavorable to women candidates with inferior organizing and budgetary power. Third,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nd sensitization to gender within the party is prerequisite to mobilizing attention to the gender variable for the selection process.

Key Words | the 19th general election, female candidates, parties'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female-friendly selection, the open competition method of selection,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